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63
----------	-------

발의연월일 : 2025. 11. 3.

발 의 자 : 이훈기 · 주철현 · 김승원
권향엽 · 박선원 · 문대립
이병진 · 허종식 · 오세희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에 제3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157조(벌칙)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

4. (생 략)	<u>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u> <u>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u> <u>람</u> 4. (현행과 같음)
----------	--